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3권 행정학개론 32~32p	개념,공식-설명	세이어(Sayer)의 법칙 세이어(Sayer)의 법칙이란 행정학의 기술성(技術性)을 강조한 것으로 행정과 경영은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만 닮았다는 이론이다. 공사행정이론론, 정치행정이론론을 강조한 것이므로 사이먼(Simon)의 정치행정이론론을 반박한 모형이다.	세이어(Sayer)의 법칙 세이어(Sayer)의 법칙이란 행정의 공공성과 정치성을 강조한 것으로 행정과 경영은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만 닮았다는 이론이다. 공사행정이론론, 정치행정이론론을 강조한 것이므로 사이먼(Simon)의 정치행정이론론을 반박한 모형이다.
		수정 사유	개념 설명 오류
3권 행정학개론 257~257p 번호 : 08	해설	[② ×] 국가공무원법은 임용방식과 업무특성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은 <u>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u>	[② ×] 국가공무원법은 임용방식과 업무특성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u>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u>
		수정 사유	해설 수정
1권 민법총칙 306~306p	개념,공식-설명	(4) 시효완성사실을 알았을 것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01.6.12. 2001다3580).	(4) 시효완성사실을 알았을 것 과거 대법원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대판 2001.6.12. 2001다3580),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대판 2025.7.24. 2023다240299[전합]).
		수정 사유	판례 변경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